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689
------	------

제출일자 : 2025. 5. 29.

제 출 자 : 금 천 구 청 장

1. 제안이유

통장 고유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통신비용 지원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통장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 통장 고유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한 통신비용 지원 명시(안 별표)
- 나. 용어 정비: 위촉 → 임명(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첨부
- 2) 입법예고(2025. 2. 21. ~ 2025. 3. 13.) 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첨부
- 4) 규제사전심사: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통 · 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행사(사업)명	대 상 (범 위)	시기	방 법	비 고
통 · 반장 직무교육	통 · 반장 (임명예정자 포함)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 실시	간식 및 실비 제공
통 · 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우수 통 · 반장	연 2회	국내 · 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
통 · 반장 포상	우수 통 · 반장	연 2회	우수 통 · 반장 시상	다과류 제공
통장 임명장 수여	통장	분기별	통장 임명에 따른 임명장 수여	다과류 제공
<삭제>				
통 · 반장 소요물품 구입	통 · 반장	수시	통 · 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단체상해 보험	통장	1회	상해, 사망, 유휴장애, 의료실비 보장	1년 단위 재계약
통장 업무수행 통신비용 지원	통장	분기별	통장 업무수행을 위한 통신비용 지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통·반장 관련 행사 및 사업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 관련)				
행사 (사업)명	대 상 (범 위)	시 기	방 법	비 고	행사 (사업)명	대 상 (범 위)	시 기	방 법	비 고
통·반장 직무교육	통·반장 (위촉예정자 포함)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 실시	간식 및 실비 제공	통·반장 직무교육	통·반장 (임명예정자 포함)	연 1회 이상	외부강사 강의 및 교육 실시	간식 및 실비 제공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우수 통·반장	연 2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	통·반장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우수 통·반장	연 2회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실시	-
통·반장 포상	우수 통·반장	연 2회	우수 통·반장 시상	다과류 제공	통·반장 포상	우수 통·반장	연 2회	우수 통·반장 시상	다과류 제공
통장 위촉장 수여	통장	분기별	통장 신규 및 재위촉에 따른 위촉장 수여	다과류 제공	통장 임명장 수여	통장	분기별	통장 임명에 따른 임명장 수여	다과류 제공
<삭제>					<삭제>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	통·반장	수 시	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통·반장 소요물품 구입	통·반장	수시	통·반장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구입	-
단체상해 보험	통장	1회	상해, 사망, 유휴장애, 의료실비 보장	1년 단위 재계약	단체상해 보험	통장	1회	상해, 사망, 유휴장애, 의료실비 보장	1년 단위 재계약
					통장 업무수행 통신비용 지원	통장	분기별	통장 업무를 위한 통신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번 개정되는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규정에 따
라 통장의 임명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
생하는 비용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자치행정과 자치행정팀 박미현
연 락 처	02 - 2627 - 1043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 2024. 10. 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531호, 2024. 10. 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원활히 전달하고 동 행정 및 주민 스스로의 지역방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23., 2021.12.31.>

제2조(통·반의 조직)

- ① 동의 관할 하에 통을 두고 통의 관할 하에 반을 둔다.<개정 2013.5.10.>
- ② 동에 두는 통의 수는 지역 여건과 거주 형태를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신설 2004.6.30., <개정 2010.11.23., 2020.3.25.>
- ③ 1통은 6개반 이상 10개반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04.6.30., 2010.11.23.>
- ④ 반은 20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하되 18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있어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한다. 다만, 특수한 지역사정이 있을 때에는 수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04.6.30., 2010.11.23.>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 삭제<2024.10.2.>

제5조 삭제<2024.10.2.>

제6조 삭제<2024.10.2.>

제7조(임무)

- ① 통·반장은 동장의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4.6.30., 2010.11.23., 2017.1.4.>
 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 활동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불편사항 등을 파악 보고
 3. 복지대상자 생활실태 파악,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발굴·연계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신고사항의 사후 확인
 5. 주민등록 일제정리 사실조사 협조
 6. 보안등, 빗물받이 등 각종 시설물 확인과 지역 청소업무 협조
 7. 각종 사건·사고 보고와 풍·수해, 제설 등 지원
 8. 재해 발생시 주민 대피와 피해상황 조사 협조
 9. 지방세·과태료·부담금 등의 고지서 송달 협조
 10. 해당 통·반 주민의 비상연락망 유지
 11.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만 해당함)
 12.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만 해당함)
 13.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그 밖에 동 행정에 필요한 사항

② 통장이나 반장의 일시 유고 시에는 통·반장의 가족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1.23.>

제7조의2(통장교육 등)

-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행정시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장으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② 통장교육은 통장으로 임명 전의 기본교육과 재직 중의 심화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개정 2024.10.2.>
- ③ 신규통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임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신설 2020.3.25.>, <개정 2024.10.2.>
- ④ 통장으로 재직 중에 실시하는 심화교육을 미이수한 사람은 통장연임을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0.11.23.>, <개정 2020.3.25.>

제7조의3(비밀유지)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신설 2010.11.23.>, <개정 2013.5.10.>

제8조(반사회)

- ① 반사회는 반 내에 거주하는 가구주나 주부로 구성한다.<개정 2010.11.23., 2020.3.25.>
- ② 반사회는 정기반사회와 임시반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개정 2010.11.23.>
- ③ 정기반사회는 월 1회로 하고 매월 25일에 개최하되 25일이 공휴일이거나 필요할 때에는 반사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0.12.16., 2010.11.23.>

제9조(통·반장회의)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 또는 통·반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0.11.23.>

제10조(편의제공)

- ①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23.>
- ②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3.5.10.>

제11조(실비수당등)

- ①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 복지업무지원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과금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개정 2010.11.23., 2017.1.4.>
- 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23.>
- ③ 통·반장에게는 구정홍보, 시찰,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제공하며 통·반장 사기 진작을 위하여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사업은 별표와 같다.<신설 2004.6.30.>, <개정 2007.5.23., 2010.11.23.>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10.15.>
[제목개정 2022.10.15.]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5. 1. 1.] [대통령령 제35149호, 2024. 12. 31., 일부개정]

-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